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등의 지급 여부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확인조사 시 종전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아닌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만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0684호, 2025. 1. 21. 공포, 2025. 4.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25. 0. 00. 공포, 2025. 4.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서식을 정비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가보훈부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7제1항제1호 중 “본인,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을 “본인 및 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을 “본인 및 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부양의무자 또는”을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또는 그”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을 각각 “본인 및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교육지원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을 “교육지원희망자 및 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지원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을 “교육지원희망자 또는 그”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제6호 및 제7호 중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을 각각 “본인 및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보조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을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보조금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을 “보조금수급희망자 또는 그”로 한다.

제16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을 각각 “본인 및 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을 “희망자 및 그”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을 “희망자 또는 그”로 한다.

별지 제1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의3서식 주석란의 1) 중 “신청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을 “신청인 및 그 가구원”으로 한다.

별지 제13호의4서식, 별지 제17호의2서식,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3호의2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가구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 여부
			-		
			-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같은 세대 거주자를 의미하며,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 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 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증질지 80g/㎡)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6.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7. 임금계좌 확인정보(통장 사본) 28. 자동차등록증 29. 자활근로자확인서 30.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 확인서 31. 차상위계층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 이 생활조정수당지급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7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가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 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수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확인·조사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생활조정수당 지급 여부 결정 관할 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 통지 신청인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동의인 (신청인 및 가구원)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¹⁾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음 ²⁾ ※ 부동의 시 우편통보(주소·전화번호 기재) 서명 또는 인 주소 및 전화번호
			-		
			-		
			-		
			-		
			-		
			-		
			-		
정보 제공 목적	[] 생활조정수당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목적	[]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				
	[] 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2항·제14조의4·제22조제4항·제63조의2 제2항·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제34조의2·제84조의3·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7·제11조의2·제16조의2·제16조의3에 따라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 등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금융회사 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조사를 위하여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청인 및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 란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통보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란에 통보받을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만약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회사 등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 3) 대상 금융회사 등의 명칭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뒤쪽 참조
- 4) 정보제공 목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 5)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의 유효기간: 동의서 제출 후 지원 대상자 결정 전까지 또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금융회사 등의 명칭 >

-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 유의사항**

「국가공유자료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해당 지원 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 신청을 각하하거나 해당 지원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교육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illegibl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금융기관명	신청인 명의의 계좌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가구원 ¹⁾							

보호실태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	--

장기요양	장기요양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 내용):							
급여 판정 내용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장기요양 급여내용	요양급여의 종류 [] 재가급여 [] 시설급여	요양기관명	요양기관 전화번호
--------------	-------------------------------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같은 세대 거주자를 의미하며,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신청인 제출서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4.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 사본 1부 5.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6.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14. 사업자등록증명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5. 임대사업자등록증
	3. 차상위본인부담감감대상자증명서	16. 휴업사실증명
	4. 장애인증명서	17. 폐업사실증명
	5. 임의대장	18. 소득금액증명
	6. 토지대장	19. 납세사실증명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20. 납세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9. 건축물대장	22. 공무원연급내역서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11. 주택가액확인서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12. 선박원부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3. 자동차등록원부	

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 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범민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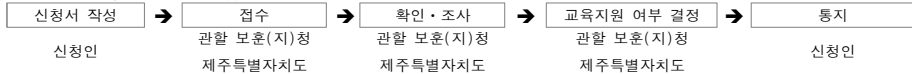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교육지원청장자와 그 **가수원**이 교육지원청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제출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육지원청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
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교육지원청장자 및 그 **가수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해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뒤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야대장 6. 토지대장 7. 토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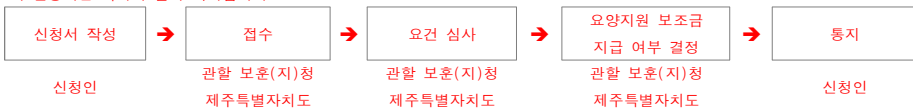
법정대리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및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보조금수급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가구원이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의2서식]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

※ 뒤쪽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대상구분	보훈번호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가구원 ¹⁾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거주지	직업	연락처	동거 여부

아파트 신청	신청종류	[] 분양아파트	[] 임대아파트	[] 영구임대아파트
	희망지역	면적	[] 전용 60㎡ 이하	[] 전용 60㎡ 초과

주거상황	거주실태	[] 자가	[] 전세	[] 월세	[] 기타
	무주택기간	년	월	(세대원 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 우선 공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1) 가구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같은 세대 거주자를 의미하며, 같은 세대가 아니더라도 배우자, 30세 미만 미혼자녀, 단순 세대 분리자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도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1. 무주택증명서류(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으로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1부 2.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3. 본인 및 그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4. 장애인증명서 5. 임아대장 6. 토지대장 7. 도지등기사항증명서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9. 건축물대장 10. 건물등기사항증명서 11. 주택가격확인서 12. 선박원부 13. 자동차등록원부 14. 사업자등록증명 15. 임대사업자등록증 16. 휴업사실증명 17. 폐업사실증명 18. 소득금액증명 19. 납세사실증명 20. 납세증명서 21.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22. 공무원연금내역서 23.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24.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25.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본인정보 제공 요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이 사무를 처리하기를 동의하는 경우 √ 표 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정보 제공 요구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을 위한 본인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서명 또는 인)

법원행정처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본인정보 제공 요구 동의서

- [] 1. 본인(신청인 및 그 가구원 각각을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2.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통하여 민원처리기관의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정보요구 대상기관: 법원행정처).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가구원

(서명 또는 인)

※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법정대리인 성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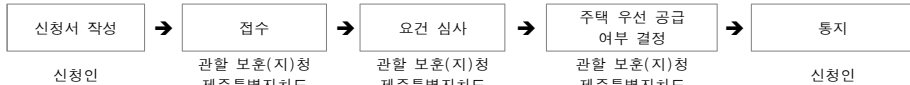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3항에 따라 주택공급 희망자와 그 가구원이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선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을 각하하거나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주택공급 희망자 및 그 가구원은 소득 및 재산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확인

담당	주무	과장	(지)청장
----	----	----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의7(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의7(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 ① -----
1. <u>본인, 그 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u>	1. <u>본인 및 그</u> -----
2. <u>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u>	2. <u>본인 및 그</u> -----
3. (생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u>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u>	② ----- -- <u>생활조정수당수급희망자 및 그</u> -----

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생활조
정수당수급희망자,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
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생 략)

제11조의2(교육지원 신청) ① 영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교육지
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교
육지원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교육지원 신
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
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
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
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
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 1부

3.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교육지원희망자, 그 부양의
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

----- . --- 생활조정
수당수급희망자 또는 그 -----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교육지원 신청) ① ---

-----.

1. 본인 및 그 -----

2. 본인 및 그 -----

3. (현행과 같음)

② -----

--- 교육지원희망자 및 그 -----

인해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희
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 가구
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
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 (생 략)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영 제84조의3제2항에
따라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
서 “보조금수급희망자”라 한다)
은 별지 제53호서식의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
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 략)

6.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
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
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7.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
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
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서 1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
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
여 보조금수급희망자, 그 부양

----- . ----- 교육지원희
망자 또는 그 -----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 ① -----

-----.

1. ~ 5. (현행과 같음)

6. 본인 및 그 -----

7. 본인 및 그 -----

② -----

-- 보조금수급희망자 및 그 --

의무자 및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u>보조급수급 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u>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 <u>보조급수급 희망자 또는 그</u> ----- ----- ----- -----.
③ (생 략) 제16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87조에 따라 주택의 우선 공급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 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53호의2서식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주택의 우선 공급 신청) ①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소득·재산 신고서 1부	2. <u>본인 및 그</u> ----- -----
3. 본인, 그 부양의무자 및 가구원에 대한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3. <u>본인 및 그</u>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	② ----- ----- -----

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택공급 <u>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및</u> 가구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 별표 5의2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주택공급 <u>희망자, 그 부양의무자 또는</u> 가구원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 <u>희망자 및 그</u> ----- ----- ----- ----- <u>희망자 또는 그</u> -----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